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

내 용

「의료급여법」 제3조,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보건복지부 「의료급여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, 소득·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상실 통보서를 지체 없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구에서는 2014년부터 정부합동감시 시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상실 처리 지연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○○○ 등 125명의 2,618회에 이르는 의료급여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68,976,750원의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2,873,07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25,170,40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6,825,49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31,079,26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3,028,53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